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9-5
--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9. 1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제안이유

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한 법률에 의한 구체적 지원 대상과 내용을 명확히 하고 '보훈예우수당'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국가보훈개별법령에 의한 지원 대상 규정(안 제3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와 아울러 마포구민의 책무 추가 신설(안 제4조)
- 다.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, 보훈예우수당, 위문금, 보훈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신설(안 제6조)
- 라.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 확대(안 제7조)
- 마. 보훈예우수당 지급근거 마련(안 제8조)
- 바. 위문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규정(안 제9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제5조, 제18조  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3조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- 다. 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## 마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8. 12. 13. ~ 2019. 1. 2. (의견제출 없음)
- 2)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: 원안 동의
- 3)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원안 동의
- 4)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19. 1.15.)
- 5)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
- 6) 비용추계서 1부
- 7)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**

**전부개정조례안**

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**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보훈 기본법」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희생 · 공헌자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- 가.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
- 나.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
- 다.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
- 라.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

2. “국가보훈대상자”란 희생 · 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.
3. “국가보훈 관계법령”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.
4. “보훈단체”란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로 한다.

1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2.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3.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4.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5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
6. 「5 ·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사람
7. 「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적용을 받는 단체

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희생 · 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,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(이하 “구민”이라 한다)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,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공훈선양사업) 구청장은 희생·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훈선양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1. 국경일·기념일 등 각종 행사 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
2.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실시
3.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문화 행사의 실시
4. 보훈관련 기념일·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안행사 및 위로·격려
5. 호국·보훈의 달에 지역 출신 희생·공헌자의 공훈선양 및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
6. 구민에 대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

제6조(예산지원)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.

1. 국가보훈대상자의 권익신장과 보훈회관 등 시설의 운영
2. 국가를 위한 희생·공헌자 추모 또는 기념사업
3. 호국·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
4.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
5.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
6.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
7.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급

8. 보훈단체 운영

9.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단체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사망위로금 지급·신청)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(이하 “위로금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위로금은 20만원으로 한다.

③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.

④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
⑤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순위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3조를 준용한다.

제8조(보훈예우수당 지급·신청)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급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,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(이하 “수당”이라 한다)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「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참전명예수당, 「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

생활보조수당 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③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.

제9조(위문금 지급·신청) ① 구청장은 제3조제3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과 추석, 호국·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제8조에 따른 수당 수급자는 위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
② 위문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 제6조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훈단체의 장은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, 예산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을 받은 보훈단체의 장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라 예산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1조(중복지원 금지) 다른 국가보훈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